

# 특수대학원학칙시행세칙 개정(안)

## 1. 개정사유

- 가. 휴학 관련 규정 개정 건(제37조): 현 규정에서는 일반휴학, 입대휴학 및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의 신청기한 및 등록휴학 가능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, 학부 규정(교무처처무시행세칙)을 준용하고 있음. 또한 등록금 반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의 명시가 필요한 바, 해당 내용을 대학원 학칙시행세칙에 명시하고자 함
- 나. 수업 관련 규정 개정 건(제44조): 「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」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에 따라 재교육전공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여 타 지역의 신입생을 유치 활성화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일반휴학신청 시기 및 등록금 반환사항 명시, 입대휴학자 등록휴학기간 명시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신청기한/등록휴학 기한 및 등록금 반환사항 명시(제37조)
- 나. 교육대학원 재교육전공에 한하여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대학원 온라인 수업 운영을 위한 내규를 신설하여 운영(제44조)

## 3. 해당(관련)부서 합의

-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, 의결된 사안임.

## 4. 신·구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
제37조(휴학) ① (생략) ② 일반휴학은 질병, 사고,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신청을 하여야 한다.	제37조(휴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일반휴학은 질병, 사고, 개인사정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신청을 할 수 있으나, 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단, 질병 또는 입원으로 인하여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일반휴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, 종합병원의 진단서(4주	자구삽입

<p>③ 일반휴학 기간은 학위과정에서 입학 후 통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<u>휴학회수</u>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<u>군입대휴학</u>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u>군입대휴학</u>은 입영통지서 또는 교육소집을 받고 <u>군에</u> 입대한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<u>군입대휴학</u>을 신청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일반휴학 기간 중에 <u>군입대하는</u> 경우에는 <u>군입대휴학</u>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⑥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: 임신·출산·육아의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임신 및 출산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 중 임신·출산·육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⑦ (생략)</p>	<p><u>이상의 입원진단서 또는 4주 이상 수업참여가 어렵다는 의사소견 진단서</u>)를 제출하여야 한다. <u>4분의 1선 이후 휴학한 경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.</u></p> <p>③ 일반휴학 기간은 학위과정에서 입학 후 통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<u>휴학횟수</u>는 제한하지 아니한다. 다만, <u>입대휴학 및 임신출산육아휴학</u>은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④ <u>입대휴학</u>은 입영통지서 또는 교육소집을 받고 입대한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하여 <u>입대휴학</u>을 신청하여야 한다. <u>등록금을 납부하고 4분의 3선 이전에 입대휴학한 자의 경우, 복학하는 당해학기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복학할 수 있다.</u></p> <p>⑤ 일반휴학 기간 중에 <u>입대하는</u> 경우에는 <u>입대휴학</u>을 추가로 신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</p> <p>⑥ 임신·출산·육아휴학 : 임신·출산·육아의 경우로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임신 및 출산확인서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원서를 <u>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</u> 제출하여야 하며, 일반휴학 중 임신·출산·육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신·출산·육아 휴학원서를 다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u>수업일수 4분의 1선이 경과한 후 휴학한 경우,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한다.</u>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자구수정</p> <p>자구삽입</p> <p>자구수정</p> <p>자구삽입</p> <p>자구수정</p> <p>자구삽입</p> <p>자구삽입</p>
<p>제44조(수업) ①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수업은 야간수업, 주간수업, 주말수업, 계절제수업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병행수업 등의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<u>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4조(수업) ① 특수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수업은 야간수업, 주간수업, 주말수업, 계절제수업,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병행수업 등의 방법들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<u>사용할 수 있으며, 온라인 수업 운영 방식은 각 대학원 내규에 따른다.</u>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	<p>자구수정</p>

(신설)	<u>부 칙(2024. 0. 0)</u> <u>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</u>	부칙신설
------	---	------